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대평가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5 제1호, 제2호)

- 1) ‘환자구성상태’는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 평가항목은 중증진료 중심 체계개선을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외래질병 비율은 기준을 강화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삭제하며, 병의원 회송체계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여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 2) ‘의료인 수’ 평가기준은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기준을 신설하고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 3) ‘의료서비스 수준’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의 평가항목은 위수술, 심장수술, 녹내장수술을 담낭수술, 유방수술, 폐절제술로 변경함.
- 4) ‘공공성’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공익적 의료영역을 강화하고, 평가항목으로는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5) 상대평가 일부항목이 신설 및 삭제됨에 따라 기준별 가중치를 변경하여 적용함.

나. 가점 평가기준 신설(안 별표5 제3호)

희귀·응급질환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비율 및 중증응급질환비율을 신설하고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5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3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2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분류	평가항목	평가항목수	표준등급충족평가항목수	배점
심장·뇌 질환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2개	2개	2
			1개	1
암 질환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4개	4개	2
			3개	1.5
			2개	1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고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유방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폐절제술	8개	7개 이상	2
			6개	1.5
			5개	1
			4개	0.5
중환자실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2개	2개	2
			1개	1
환자중심	환자경험	1개	영역별 합산점수를 1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0.2

별표5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상대평가 기준		가중치(%)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4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5
	경증회송률	5
의료인 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8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2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미취통증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의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수	5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	5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산출점수	5
공공성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2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2
	코로나19 참여기여도	1
합계		100

별표5 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10점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4%인 경우 6점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4% 초과 50%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XX.XX \times 0.25$)-2.5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1)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2.0% 이하인 경우 10점 2)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7.0%인 경우 6점 3)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2.0% 초과 7.0% 미만인 경우 (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XX.XX \times (-0.80)$)+11.60
경증회송률	1) 경증회송률이 3.0%이상인 경우 10점 2) 경증회송률이 0.1%인 경우 6점 3) 경증회송률이 0.1% 초과 3.0% 미만인 경우 (경증회송률 $XX.XX \times 1.3793$)+5.8621

별표5 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항목		등급구간 및 배점					
의료인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구간	4명 이하	5.5명 이하 4.0명 초과	7.0명 이하 5.5명 초과	8.5명 이하 7.0명 초과	10명 이하 8.5명 초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배치수준	1) 기준병상당(300병상 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					
		점수	1점	0.75점	0.5점		
		구간	1.0명 이상	1.0명 미만 ~ 0.4명 이상	0.4명 미만 ~ 0명 초과		
		2) 입원환자전담전문의 팀구성 현황					
		점수	1점	0.5점	0.3점		
		유형	3형 (주7일형-24시간)	2형 (주7일형-주간)	1형 (주5일형-주간)		
의료인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구간	1.9명 이하	2.0명 이하 ~ 1.9명 초과	2.1명 이하 ~ 2.0명 초과	2.2명 이하 ~ 2.1명 초과	2.3명 이하 ~ 2.2명 초과	
교육기능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구간	10개과 이상	9개과	8개과	7개과	6개과	
	교육수련 영역 평가	의료질 평가의 교육수련 영역 평가의 최근 3년 결과를 연도별로 10점 환산하여 3년 평균 결과 반영					

별표5 제2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공성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점수	2점	1.5점	1점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구간	10%이상	9%이상~ 10%미만	8%이상~ 9%미만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구간	1.0%이상	0.9%이상~ 1.0%미만	0.8%이상~ 0.9%미만
코로나19 참여기여도	1)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가) (2021년) 3.77%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3.77%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2452) + 0.0756]$ 나) (2022년) 1.8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82%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5233) + 0.0476]$ 2) 경기도, 인천광역시 가) (2021년) 2.30%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2.30%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4091) + 0.0591]$ 나) (2022년) 1.0%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0% 미만인 경우: $[XX.XX \times 1]$ 3) 강원특별자치도 가) (2021년) 28.68%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28.68%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315) + 0.0966]$ 나) (2022년) 18.5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8.52%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489) + 0.0944]$ 4)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가) (2021년) 14.18%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4.18%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639) + 0.0939]$ 나) (2022년) 7.15%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7.15%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1277) + 0.0869]$ 5)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가) (2021년) 10.04%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0.04%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905) + 0.0914]$ 나) (2022년) 5.2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5.22%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1758) + 0.0823]$ 6)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가) (2021년) 5.17%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5.17%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1775) + 0.0823]$ 나) (2022년) 2.66%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2.66%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3516) + 0.0647]$			

* 2021년(가중치 50%)은 코로나19 중증환자비율, 2022년(가중치 50%)은 코로나19 준중증이상환자비율로 산출

별표5 제3호2)나)를 2)라)로 하고, 같은 호 2)나) 및 2)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희귀질환비율은 1.3%이상인 경우 1점, 0.4%인 경우 0.6점, 0.4% 초과 1.3% 미만인 경우는 산출식 $[(XX.XX \times 0.4444) + 0.4223]$ 에 따라 가점 적용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다) 중증응급질환비율은 35.0%이상인 경우 1점, 6.0%인 경우 0.6점, 6.0% 초과 35.0%미만인 경우는 산출식 $[(XX.XX \times 0.0138) + 0.5170]$ 에 따라 가점 적용(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대평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및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은 지정신청일 전월말 기준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질병종류 및 환자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20.12.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별표6에 의한다.

② 별표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제2호가목의 종전규정을 따르며, 2

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상대평가 방법에 관한 특례) ① 별표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증회송률 및 제3호2)나) 개정 규정에 따른 희귀질환비율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별표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별표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코로나19 참여기여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별표5 제3호2)다)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응급질환비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u>2023년 6월 30일</u> 까지로 한다.</p>	<p>제10조(재검토기한) ----- ----- ----- ----- ----- <u>2026년 6월 30일</u> -----.</p>

[별표 2]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방법 (제4조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별 배점					1.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 분류	평가 항목	평가 항목수	표준등급 총중평가 항목수	배 점	평가 분류	평가 항목	평가 항목수	표준등급 총중평가 항목수	배 점
심장· 뇌 질환	관상동맥우 회술, 급성 기뇌졸중	2개	2개	2	심장· 뇌 질환	관상동맥우 회술, 급성 기뇌졸중	2개	2개	2
			1개	1				1개	1
암 질환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4개	4개	2	암 질환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4개	4개	2
			3개	1.5				3개	1.5
			2개	1				2개	1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위수술, 대장수술, 고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8개	7개 이상	2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고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유방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폐절제술	8개	7개 이상	2
			6개	1.5				6개	1.5
			5개	1				5개	1
			4개	0.5				4개	0.5
중환자실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2개	2개	2	중환자실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2개	2개	2
			1개	1				1개	1
환자중심	환자경험	1개	영역별 합산점수를 1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 ×0.2	환자중심	환자경험	1개	영역별 합산점수를 10점으로 환산	환산점수 ×0.2
2. (생략)					2. (현행과 동일)				

[별표 5]

상대평가 방법 (제7조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1.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상대평가 기준		가중치(%)	상대평가 기준		가중치(%)
환자 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45	환자 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40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5		경증회송률	5
의료인 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0	의료인 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8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2
교육 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미취통증 의학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수	5		교육 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미취통증 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수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	5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		5
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산출점수	5	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산출점수	5
합계		100	공공성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2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2
				코로나19 참여기여도	1
			합계		100

현 행	개 정 안																
<p>2.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p> <p>가. <u>환자구성상태</u></p>	<p>2.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p> <p>가. <u>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u></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th> </tr> </thead> <tbody> <tr> <td>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td> <td>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44%</u>이상인 경우 10점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0%</u>인 경우 6점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0%</u> 초과 <u>44%</u>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XX.XX \times 0.2857$)-2.5708 </td> </tr> <tr> <td>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td> <td> 1)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4% 이하인 경우 10점 2)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14%인 경우 6점 3)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4% 초과 14% 미만인 경우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XX.XX \times (-0.7142)$)+15.9992 </td> </tr> <tr> <td>「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td> <td> 1)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4.5%</u> 이하인 경우 10점 2)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11%</u>인 경우 6점 3)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4.5%</u> 초과 <u>11%</u> 미만인 경우 (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XX.XX \times (-0.6153)$)+12.7688 </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44%</u> 이상인 경우 10점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0%</u> 인 경우 6점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0%</u> 초과 <u>44%</u>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XX.XX \times 0.2857$)-2.5708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1)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4% 이하인 경우 10점 2)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14%인 경우 6점 3)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4% 초과 14% 미만인 경우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XX.XX \times (-0.7142)$)+15.999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1)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4.5%</u> 이하인 경우 10점 2)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11%</u> 인 경우 6점 3)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4.5%</u> 초과 <u>11%</u> 미만인 경우 (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XX.XX \times (-0.6153)$)+12.7688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th> </tr> </thead> <tbody> <tr> <td>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td> <td>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50%</u>이상인 경우 10점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4%</u>인 경우 6점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4%</u> 초과 <u>50%</u>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XX.XX \times 0.25$)-2.50 </td> </tr> <tr> <td>「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td> <td> 1)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2.0%</u> 이하인 경우 10점 2)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7.0%</u>인 경우 6점 3)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2.0%</u> 초과 <u>7.0%</u> 미만인 경우 (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XX.XX \times (-0.80)$)+11.60 </td> </tr> <tr> <td><u>경증회송률</u></td> <td> 1) 경증회송률이 3.0%이상인 경우 10점 2) 경증회송률이 0.1%인 경우 6점 3) 경증회송률이 0.1% 초과 3.0% 미만인 경우 (경증회송률 $XX.XX \times 1.3793$)+5.8621 </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50%</u> 이상인 경우 10점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4%</u> 인 경우 6점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4%</u> 초과 <u>50%</u>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XX.XX \times 0.25$)-2.5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1)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2.0%</u> 이하인 경우 10점 2)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7.0%</u> 인 경우 6점 3)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2.0%</u> 초과 <u>7.0%</u> 미만인 경우 (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XX.XX \times (-0.80)$)+11.60	<u>경증회송률</u>	1) 경증회송률이 3.0%이상인 경우 10점 2) 경증회송률이 0.1%인 경우 6점 3) 경증회송률이 0.1% 초과 3.0% 미만인 경우 (경증회송률 $XX.XX \times 1.3793$)+5.8621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44%</u> 이상인 경우 10점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0%</u> 인 경우 6점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0%</u> 초과 <u>44%</u>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XX.XX \times 0.2857$)-2.5708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1)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4% 이하인 경우 10점 2)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14%인 경우 6점 3)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4% 초과 14% 미만인 경우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XX.XX \times (-0.7142)$)+15.999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1)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4.5%</u> 이하인 경우 10점 2)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11%</u> 인 경우 6점 3)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4.5%</u> 초과 <u>11%</u> 미만인 경우 (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XX.XX \times (-0.6153)$)+12.7688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50%</u> 이상인 경우 10점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4%</u> 인 경우 6점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u>34%</u> 초과 <u>50%</u>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XX.XX \times 0.25$)-2.5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1)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2.0%</u> 이하인 경우 10점 2)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7.0%</u> 인 경우 6점 3)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u>2.0%</u> 초과 <u>7.0%</u> 미만인 경우 (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XX.XX \times (-0.80)$)+11.60																
<u>경증회송률</u>	1) 경증회송률이 3.0%이상인 경우 10점 2) 경증회송률이 0.1%인 경우 6점 3) 경증회송률이 0.1% 초과 3.0% 미만인 경우 (경증회송률 $XX.XX \times 1.3793$)+5.8621																

현행	개정안
----	-----

나.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항목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의료인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4.0 명이하	5.5 명이하 ~4.0 명초과	7.0 명이하 ~5.5 명초과	8.5 명이하 ~7.0 명초과	10 명이하 ~8.5 명초과
	간호사 1 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9 명이하	2.0 명이하 ~1.9 명초과	2.1 명이하 ~2.0 명초과	2.2 명이하 ~2.1 명초과	2.3 명이하 ~2.2 명초과
교육기능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10개과 이상	9개과	8개과	7개과	6개과
	교육수련 영역 평가	의료질 평가의 최근 3년 결과를 연도별로 10점 환산하여 3년 평균 결과 반영				

다. (생략)
<신설>

나.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

항목	등급구간 및 배점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의료인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구간	4명 이하	5.5명 이하 4.0명 초과	7.0명 이하 5.5명 초과	8.5명 이하 7.0명 초과	10명 이하 8.5명 초과
		1) 기준병상당(300병상 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배치수준	점수	1점	0.75점	0.5점		
		구간	1.0명이상	1.0명 미만 ~ 0.4명 이상	0.4명 미만 ~ 0명 초과		
2) 입원환자전담전문의 팀구성 현황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점수	1점	0.5점	0.3점			
	유형	3형 (주7일형 -24시간)	2형 (주7일형 -주간)	1형 (주5일형 -주간)			
교육기능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구간	10 개과 이상	9 개 과	8 개 과	7 개 과	6 개 과
교육수련 영역 평가	의료질 평가의 교육수련 영역 평가의 최근 3년 결과를 연도별로 10점 환산하여 3년 평균 결과 반영						

다. (현행과 같음)
라. 공공성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점수	2점	1.5점	1점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구간	10%이상	9%이상~ 10%미만	8%이상~ 9%미만
	점수	2점	1.5점	1점
응급격리 병실 병상확보율	구간	1.0%이상	0.9%이상~ 1.0%미만	0.8%이상~ 0.9%미만
	점수	2점	1.5점	1점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837 297 946 436">평가항목</th> <th data-bbox="946 297 1399 436">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37 436 946 2004"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u>코로나19</u> <u>참여</u> <u>기여도</u> </td> <td data-bbox="946 436 1399 757"> 1)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가) (2021년) 3.77%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3.77%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2452) + 0.0756]$ 나) (2022년) 1.8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초과 1.82%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5233) + 0.0476]$ </td> </tr> <tr> <td data-bbox="946 757 1399 1039"> 2) 경기도, 인천광역시 가) (2021년) 2.30%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2.30%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4091) + 0.0591]$ 나) (2022년) 1.0%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0% 미만인 경우: $[XX.XX \times 1]$ </td> </tr> <tr> <td data-bbox="946 1039 1399 1359"> 3) 강원특별자치도 가) (2021년) 28.68%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28.68%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315) + 0.0966]$ 나) (2022년) 18.5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8.52%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489) + 0.0944]$ </td> </tr> <tr> <td data-bbox="946 1359 1399 1713"> 4)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가) (2021년) 14.18%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4.18%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639) + 0.0939]$ 나) (2022년) 7.15%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7.15%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1277) + 0.0869]$ </td> </tr> <tr> <td data-bbox="946 1713 1399 2004"> 5)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가) (2021년) 10.04%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0.04%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905) + 0.0914]$ 나) (2022년) 5.2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5.22% 미만인 경우: </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u>코로나19</u> <u>참여</u> <u>기여도</u>	1)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가) (2021년) 3.77%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3.77%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2452) + 0.0756]$ 나) (2022년) 1.8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초과 1.82%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5233) + 0.0476]$	2) 경기도, 인천광역시 가) (2021년) 2.30%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2.30%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4091) + 0.0591]$ 나) (2022년) 1.0%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0% 미만인 경우: $[XX.XX \times 1]$	3) 강원특별자치도 가) (2021년) 28.68%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28.68%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315) + 0.0966]$ 나) (2022년) 18.5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8.52%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489) + 0.0944]$	4)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가) (2021년) 14.18%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4.18%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639) + 0.0939]$ 나) (2022년) 7.15%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7.15%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1277) + 0.0869]$	5)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가) (2021년) 10.04%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0.04%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905) + 0.0914]$ 나) (2022년) 5.2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5.22%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u>코로나19</u> <u>참여</u> <u>기여도</u>	1)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가) (2021년) 3.77%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3.77%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2452) + 0.0756]$ 나) (2022년) 1.8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초과 1.82%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5233) + 0.0476]$								
	2) 경기도, 인천광역시 가) (2021년) 2.30%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2.30%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4091) + 0.0591]$ 나) (2022년) 1.0%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0% 미만인 경우: $[XX.XX \times 1]$								
	3) 강원특별자치도 가) (2021년) 28.68%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28.68%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315) + 0.0966]$ 나) (2022년) 18.5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8.52%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489) + 0.0944]$								
	4)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가) (2021년) 14.18%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4.18%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639) + 0.0939]$ 나) (2022년) 7.15%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7.15%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1277) + 0.0869]$								
	5)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가) (2021년) 10.04%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10.04%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0905) + 0.0914]$ 나) (2022년) 5.22%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5.22% 미만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p>3. 평가방법</p> <p>1) (생 략)</p> <p>2) 1)에서 구한 점수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p> <p>가)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XX.XX \times 0.1758) + 0.0823]$</td> </tr> <tr> <td></td> <td>6)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가) (2021년) 5.17%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5.17%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1775) + 0.0823]$ 나) (2022년) 2.66%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초과 2.66%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3516) + 0.0647]$</td> </tr> <tr> <td colspan="2">* 2021년(가중치 50%)은 코로나19 중증환자비율, 2022년(가중치 50%)은 코로나19 준중증이상 환자비율로 산출</td> </tr> </tbody> </table> <p>3. 평가방법</p> <p>1) (현행과 동일)</p> <p>2) ----- ----- --.</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u>희귀질환비율은 1.3%이상인 경우 1점, 0.4%인 경우 0.6점, 0.4% 초과 1.3%미만인 경우는 산출식$[(X X.XX \times 0.4444) + 0.4223]$에 따라 가점 적용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u></p> <p>다) <u>중증응급질환비율은 35.0%이상인 경우 1점, 6.0%인 경우 0.6점, 6.0% 초과 35.0%미만인 경우는 산출식$[(XX.XX \times 0.0138) + 0.5170]$에 따라 가점 적용(배점은 소수점 2자리</u></p>	평가 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XX.XX \times 0.1758) + 0.0823]$		6)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가) (2021년) 5.17%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5.17%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1775) + 0.0823]$ 나) (2022년) 2.66%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초과 2.66%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3516) + 0.0647]$	* 2021년(가중치 50%)은 코로나19 중증환자비율, 2022년(가중치 50%)은 코로나19 준중증이상 환자비율로 산출	
평가 항목	등급 구간 및 배점 (*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XX.XX \times 0.1758) + 0.0823]$								
	6)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가) (2021년) 5.17%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 초과 5.17%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1775) + 0.0823]$ 나) (2022년) 2.66%이상인 경우 1점, 0.1%인 경우 0.1점, 0.1%초과 2.66% 미만인 경우: $[(XX.XX \times 0.3516) + 0.0647]$								
* 2021년(가중치 50%)은 코로나19 중증환자비율, 2022년(가중치 50%)은 코로나19 준중증이상 환자비율로 산출									

현행	개정안
<u>나)</u> (생략) 3)~5) (생략)	<u>까지 산출)</u> <u>라)</u> (현행과 동일) 3)~5) (현행과 동일)